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7. 14 선고 2022가단269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종중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7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경북 성주군 C 임야 46,00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 부분 지상 판넬벽돌조 스톨트지붕 우사 53㎡를 철거하고,
나. 위 가.항 기재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ㄴ, ㄷ,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A) 부분 토지 211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문현정

별지